

#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방세 납부안내



문의 사항은 안산시 세무과 031-000-0000



## 간단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!



은행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- 고지서가 있으면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고지서가 없어도 체크(신용)카드, 통장으로 조회·납부가 가능합니다.  
(은행의 CD/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)



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위택스(www.wetax.go.kr), 인터넷 뱅킹

※ 회원가입 후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


계좌송금 납부도 가능합니다.

지정 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

※ 계좌번호는 고지서 또는 시청·읍면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급여, 예금, 주택임차보증금, 보험금 등이 압류될 수 있으며

- 소유하신 차량, 부동산 등이 공매처분 될 수 있습니다.
- 그 밖에도 체류연장, 관허사업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

특히,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.

※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

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

## 지방세란 무엇인가요?

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. 주요 지방세로는 주민세, 자동차세, 취득세,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.

## 외국인도 지방세를 내야 하나요?

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, 자동차 등을 구입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여러분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외국인의 정착 및 고용지원, 복지 증대 등에도 사용됩니다.

관내에 주소가 있다면

## 주민세

매년 8월

고지된 **세액**을 납부해야 합니다.



### 납세의무자

국내에 주소를 둔 내·외국인(세대주)  
※ 외국인과의 생계를 같이 하는 그 가족은 제외

납부세액 5,000원

매년 8월 1일

납부기한 매년 8월 16일~8월 31일

자동차나 집을 취득했다면

## 취득세

60일 이내에

**신고·납부**를 해야 합니다.



### 납세의무자

자동차,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

납부방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

또는 등기·등록을 하기 전까지  
시·군·구청에 신고·납부

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

## 자동차세

6월, 12월

고지된 **세액**을 납부해야 합니다.



### 납세의무자

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

과세기준일 6월 1일, 12월 1일

납부기한 연2회 납부(10만원 미만 1회납)

6월 16일~6월 30일(1기분)

12월 16일~12월 31일(2기분)

Tip

연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 세액의 10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